

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I 사업 개요

1. 해운·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

- (사업내용) 국내 해운·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 물류거점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*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·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 (경제·기술·재무 등)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

- (지원대상) 국내 해운·물류기업의 ①해외 현지 기업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 또는 ②해외물류 인프라 개발·투자 및 운영사업 등

구분	지원 대상
인수합병형	현지 물류 기업(해운, 3PL, 육상, 창고, 포워딩 등)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 물류시장 진출 및 해외사업 수행에 관한 타당성 조사·분석
시설투자형	해외 항만터미널·물류센터 등 물류 시설 개발 및 투자 등을 통해 현지 물류시장 진출 및 해외사업 수행에 관한 타당성 조사·분석

- (지원규모) 최대 2억원 이내 조사비용의 50% 지원

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이며,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 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필요

- (지원내용) 신청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(계약 기준)에 대한 지원

*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(예: 해외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** 사업 선정 이후 보조금 지원한도 내 잔여 예산에 따라 총예산의 ±20%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며(기업분담금 50% 이상), 총예산 변경 관련 절차는 공문서로 신청·승인 필요

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사업

- (사업내용) 국내 해운·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**해외 진출, 현지 법인설립, 물류프로세스 설계, 해외사업 확대** 등에 소요되는 조사분석 직접비용 지원
- (지원대상) **해외물류거점 및 네트워크 확보, 현지 사무소 및 법인 설립, 수출입 물류공급망 확보** 등 ①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 및 ②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

구분	지원 대상
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	해외진출 및 해외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현지 물류시장 조사, 글로벌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,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조사 등
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	현지 법인·지사 설립을 완료한 국내 해운·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(현지 사업 운영 진단, 물류 네트워크 고도화, 규제 대응 및 경영 리스크 최소화)

- (지원규모) 최대 5천만원 이내 **조사비용의 50%** 지원
- (지원내용) **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** 등을 위한 **직접비용**(인건비, 해외출장비, 컨설팅 자문 등)에 대한 지원
 - 해외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**조사컨설팅**은 신청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)이 **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**
 - 다만, 자문 또는 컨설팅(법률, 회계, 세무 등) 일부를 국내외 전문기관·컨설팅 업체 및 타 물류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
 - *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및 총 사업예산의 최대 30%까지 편성 가능하며,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자문 및 용역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며, 자체 인건비 및 출장비 등 편성 불가
 - ** 사업 선정 이후 보조금 지원한도 내 잔여 예산에 따라 총예산의 ±20%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며(기업분담금 50% 이상), 총예산 변경 관련 절차는 공문서로 신청·승인 필요

II

사업 신청 대상

1. 해운·물류 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

□ (신청대상) 국내 해운·물류기업(단독 또는 컨소시엄)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「은행법」 제8조의 은행,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기금과 공제회, 해외 물류투자를 위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

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협력·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, 지정된 기업은 공동 지분투자(5%이상)하여 전체 투자기간에 물류시설 운영 참여 필요

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사업

□ (신청대상) ①물류기업 단독 또는 ②화주-물류기업 컨소시엄

* 화주·물류기업 컨소시엄은 1:多, 多:多, 多:1의 형태로 참여 가능

- (물류기업)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(화주기업)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·유통·무역·건설·자원·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
-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
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
3. 중복 신청 제한

□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, 당해 연도 단일 기업 2건 이상의 지원사업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가

* 단, 2차 모집까지 선정기업 미달성시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사업 수행 가능

III

사업 신청 방법

□ (접수기간) 2026. 2. 20(금) 09:00 ~ 2026. 3. 20(금) 18:00까지

□ (제출서류) 하단의 전체 서류 원본을 합본(PDF 형식)으로 이메일 제출

○ 신청서 및 제출 양식은 국제물류정보포털(withlogis.co.kr)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
번호	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	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각 1부 -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-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	전자파일(PDF) e-mail 제출	붙임 1, 2
②	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	"	붙임 1, 2
③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"	
④	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- 중소기업: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- 중견기업: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-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 - 물류사업 관련 등록증(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등)	"	
⑤	최근 4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	"	
⑥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	"	
⑦	그 밖에 사업 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	"	

※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, 사업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

※ 유효한 우수 물류기업 인증서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(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)을 제출 시 가점 부여

□ (제출방법) 제출 서류 일체 접수 기간 내 이메일(hjsung@kmi.re.kr) 제출

□ (문의처)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TEL 051-797-4913/4648 E-mail: kdong@kmi.re.kr/hjsung@kmi.re.kr

IV

신청 기준 및 평가 방법

- (선정 기준) 서류심사(1차) 및 사업제안서 발표(2차) 심사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(예산 범위 내 선정)
 - *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,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신청 금액 대비 감액될 수 있음
- (제안서 발표) 사업제안서 발표 일정은 신청기업 개별 통지 예정
 - (심사 방법)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 대상 사업 제안서 발표(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)
 - * 별첨 「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」에 따라 심사 예정
 - ** 사업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의 발표 자료(PPT, PDF 등) 제출 예정
- (선정 결과 발표) 제안서 발표 평가 이후 기업별 개별 통지

V

기타 및 유의사항
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, 누락 혹은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이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신청기업은 동 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, 성과 확산,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·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조사, 성과 발표회 및 모니터링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(051-797-4913/4648)로 문의 요망

[첨부]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

- [붙임] 1.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
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끝.

첨부

사업제안서 평가 기준

□ (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) 정량평가 30점, 정성평가 70점(만점 100점)

* 신생기업으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업 신용평가 결과 등 관련 실적 및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해당 모집 회차 기업의 항목별 평균점과 동일 점수 부여

○ 투자 적합성, 신청기업의 조직·사업 역량, 사업계획의 우수성, 사업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

평가 항목		배점	비고
투자 적합도 (15)	① 사업 대상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	5	정량평가 (30)
	② 사업 대상국의 물류 투자 여건	5	
	③ 사업 대상국의 투자안정성	5	
기업역량 (25)	① 기업 신용도	5	
	② 기업 성장 가능성	5	
	③ 기업 수익성	5	
	④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 및 사업추진 역량	10	
사업계획 (40)	①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	15	정성평가 (70)
	② 사업계획의 우수성	15	
	③ 수익구조의 합리성	5	
	④ 예산 편성의 적합성	5	
사업 기대효과 (20)	① 사업 기대효과	10	
	② 해외진출 파급효과	10	
합 계		100	-

※ (가산점) 우수물류인증 기업(3점 가점), 우수선화주인증 기업(3점 가점), 광물·자원 글로벌 공급망 구축 사업(3점 가점)

- (정량평가) 사업 대상국의 투자 적합성과 신청기업의 신용도 등의 항목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전 평가

정량평가 항목		평가 기준	배점
투자 적합성	사업 대상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	5년간 평균 GDP 성장률 기준	5
	사업 대상국의 물류 투자 여건	LPI 지수 기준	5
	사업 대상국의 투자 안전성	국가 신용등급 기준	5
기업 역량	기업 신용도	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기준	5
	성장 가능성	최근 3개년도 매출액 성장률	5
	수익성	최근 3개년도 영업이익률	5
가점	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	우수물류기업 인증 획득 여부	3(가점)
	우수선화주 인증기업	우수선화주 인증 획득 여부	3(가점)
	광물·자원 공급망 관련 사업	광물·자원 공급망 구축 대상 사업 여부	3(가점)

① 사업 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(5점)

-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기준

구분	3.5% 초과	3.5~2.5%대	2.5~1.5%대	1.5~0.5%대	0.5% 미만
점수	5점	4점	3점	2점	1점

② 사업 대상국의 물류 투자 여건(5점)

- LPI(Logistics Performance Index) 기준

구분	100위 미만	100~71위	70~41위	40~11위	1~10위
점수	5점	4점	3점	2점	1점

③ 사업 대상국의 투자 안전성(5점)

-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기준

구분	Aaa/AAA	Aa/AA~A/A	Baa/BBB	Ba/BB~B/B	Caa/CCC 이하
점수	5점	4점	3점	2점	1점

④ 기업 신용도(5점)

-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기준

구분	AAA~AA	A	BBB	BB~B	CCC 이하
점수	5점	4점	3점	2점	1점

⑤ 성장 가능성(5점)

- 최근 3개년 매출액 성장률 기준

구분	12.5% 초과	10.5~12.5% 미만	8.5~10.5% 미만	6.5~8.5% 미만	6.5% 미만
점수	5점	4점	3점	2점	1점

⑥ 수익성(5점)

-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 기준

구분	3.5% 초과	2.5~3.5% 미만	1.5~2.5% 미만	0.5~1.5%대	0.5% 미만
점수	5점	4점	3점	2점	1점

⑦ 우수물류기업 인증 업체(가점 3점)

-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발행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제출

⑧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업체(가점 3점)

- 해양수산부 장관 발행 우수선화주 인증서 제출

⑨ 광물·자원 글로벌 공급망 구축 관련 사업(가점 3점)

- ‘광물·자원 공급망 구축’ 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
- (정성평가)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 평가

□ (심사진행) 기업별 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(총 30분)

□ (평가방법)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,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하고 고득점순으로 선정

- 평균 점수 60점 미만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